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 22호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강릉시 의 회 의 장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22조에 따른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나.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행 기능을 규정(안 제4조)
- 다.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22조에 따른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함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강릉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2. 강릉시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추진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4. 그 밖의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협회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회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② 보조금의 신청, 결정, 정산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회의 협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를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 한다.